■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31-357.
http://doi.org/10.17948/kcs.2023..98.331

조선 전기 부형(父兄)의 위상과 교육적 책무*

송수진(宋秀辰)**

목 차

1. 머리말
2. 조선 전기 유교식 '가(家)'의 형성
3. 조선 전기 '가' 교육의 담당자
4. 부형의 교육적 책무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그 한계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 전기 '가(家)'를 대표하여 구성원의 교화와 교육을 책임졌던 부형(父兄)에게 주어진 교육적 책무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리학적 질서를 지향한 조선 왕조는 국초부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강화했다. 국가 차원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흥학(興學)을 장려하며 민(民)의 교화와 교육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민간의 가정 교육을 장려하고 통제하기 위해 부형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선 왕조는 민간의 '가'가 사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구성원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도록 관여하였다. 국가는 부(父)를 중심으로 하는 종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 교육의 책무자로 부형을 강조하는 한편, 공적인 담론에서 부녀자는 소인(小人)과 어린아이와 같이 교육받아야 할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동시에 관학 및 과거제도의 정착과 운영을 위해 부형이 국가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였다. 더 나아가 부형이 직접 자제들의 유교적 소양 함양을 교육 및 감독하도록 일종의 부형실명제와 연좌제를 도입하였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48890)
** 경북대 인문학술원 연구원.

이러한 국가 정책은 처음부터 원만하게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초 내내 국가 정책의 협력자이자 '가' 교육의 책임자로 부형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주제어: '가(家)' 교육, 가정, 부형(父兄), 부형 연좌제, 부형 실명제, 조선 전기.

1. 머리말

예나 지금이나 가정은 인간 형성 교육의 출발점이다. 한국의 전통 교육에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효제(孝弟)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었다. 전통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가 충효(忠孝)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1]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유학적 전통에 따르면 이상적 부모는 자녀를 선(善)으로 이끌고 자녀는 부모와 형제를 제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한편 유교에서 "효는 가족 자체의 질서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전체 사회조직의 원리로 자리매김"[2]하기에 "가정은 사의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다."[3] 따라서 유교 윤리 이념을 민(民)에게 보급하기 위해 국가 입장에서는 가정 단위에서의 교육을 단순히 민간의 사적 영역으로 놔둘 수는 없었다. '유교윤리가 양반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생활화된 왕도정치(王道政治)'[4]를 실현하고자 했던 조선 왕조의 경우, 중앙집권통치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정이 담지한 교육적 기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태어날 때부터 덕을 좋아하는 양심은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이 앞장 서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랫사람은 보고 느껴서 흥기할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법을 세워서 인군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의 도리를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으면, 모두 그를 위하여 정문(旌門)을 세워서 표창해 주어 의로운 행실을 장려하고 풍속을 순후하게 하는 것이다.[5]

---

1) 『태조실록』, 권1, 총서 131번째 기사. "父母敎子經書, 欲其爲忠爲孝也."
2) 김도일, 「유교 가족주의의 이중성: 파벌과 권위주의의 유가적 기원」, 『철학』 135, 한국철학회, 2018, 2-3면. 김도일에 따르면 유교 가족주의의 핵심은 단순히 가족 중시가 아니라 의제(擬制)적 확대에 있으며 유가정치사상에 내재한 주요한 기제 중의 하나이다.
3) 이승환, 「한국 가족주의의 변화과정과 미래방향 : 한국 "가족주의"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 가능성」, 『유교사상문화연구』 20, 한국유교학회, 2004, 62면.
4) 이존희, 『한국사 23: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조선 왕조는 국초부터 불교를 대체하는 유학을 새로운 사회이념으로 정착시키고자 했다. 고려말 전해진 원의 성리학은 주자성리학을 체제교학화하여 운용했던 성리학으로, 15세기는 정치질서를 통해 국가적인 의례를 정비해가는 시기였다.[6] 『대명률』 체제를 따르면서, 『경제육전』, 『경국대전』 등의 유교식 법률 체제를 완비함으로써 가정 단위의 의례에서부터 왕실 단위에 이르기까지 유교 윤리 이념을 접목하였다. 무엇보다 '가(家)'에 새로운 통치 이념을 보급함으로써 유교의 생활화를 지향하고자 했다. 유학적 인간관에 따른 성리학적 예법 질서를 새 왕조에 구현하고자 했던 정도전의 위 발언은 조선 초기 국가가 지향하는 가정 교육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태조의 즉위 교서에서부터 "충신(忠臣)·효자(孝子)·의부(義夫)·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하고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순방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7] 또한 배극렴과 조준 등은 "서인(庶人)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농사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조세(租稅)의 반을 감면하여 주어 풍속을 권장"[8]하는 내용의 상소를 통해 가정이 국가 정책에 부응할 시 얻게 될 경제적 보상을 제시하였다. 권근은 "군주나 지방관 즉 국가가 효행에 대한 현실적 보응을 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확립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9] 이처럼 조선 왕조는 건국 초부터 성리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여 가정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관여하고자 했다.

한편 한국 전통의 가정 교육의 이론과 범주는 효의 다름 아니라 할 정도로 유학적 테두리 안에서 논해진다. 이에 따라 유학 경전이나 유학자의 가훈, 교훈, 수신서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 교육이 추구하는 가정 교육의 내용과 성격 등을 논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유학 전반이나 개인의 사상 내지

5) 정도전, 『朝鮮經國典』 上, 「禮典」, 旌表(『三峰集』 13). "秉彝好德之良心, 人皆有焉. 然在上者不先倡之, 下之人無所觀感而興起矣. 故國家立法, 其有忠於君, 孝於親, 全夫婦之道者, 皆爲之旌而表之, 礪行義而厚風俗也."
6)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20-21면.
7) 『태조실록』, 권1, 1392년(태조 1) 7월 28일.
8) 『태조실록』, 권1, 1992년(태조 1) 9월 24일.
9) 강문식, 「권근 『효행록(孝行錄)』 주해의 경세론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8, 한국사상사학회, 2007, 271면.

학문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10]해 가정과 국가 정책 및 제도와의 관련성을 소홀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 성리학을 이념으로 건국된 조선 사회는 국초부터 중앙에서 향촌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여러 정책을 고민해왔다. 이에 '교화의 근본으로 인륜을 밝히고 인재를 양성하는 주체는 학교'[11]라는 인식하에 관학을 중심으로 과거제를 운영하고, 국가의 공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권을 둘 것을 천명하였다.[12] "조선조 전 기간을 거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항상적으로 강력하게 작용"[13]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 전기의 수령칠사(守令七事),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鄕校) 설치 및 운영, 유교 서적의 보급 등은 성리학적 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교육 정책이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수령과 학교의 스승들에게 교육적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였다. 국가는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와 학교뿐만 아니라 민간의 가정에게도 일말의 교육적 역할 내지 책무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 초기 부형(父兄)에게 주어진 교육적 책무와 관련하여 시행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 가지 가정, 즉 조선 초기부터 국가는 성리학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형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부형을 교육에 어떻게 동참시켰는지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나 부형에게 주어진 교육 관련 역할, 권한, 활동 등의 내용과 성격 등이 처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역사·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모해왔다는

10) 도민재,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유교」, 『종교교육학연구』 10,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29-47면; 박균섭, 「효도와 효행 : 해석사 검토」, 『인문논총』 78(4),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21, 165-207면; 이상호, 「유교의 자녀교육론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79, 동양철학연구회, 2014, 115-145면.

11) 정도전, 『朝鮮經國典』 上, 「禮典」, 學校(『三峰集』 13). "學校 敎化之本也. 于以明人倫, 于以成人才."

12)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2, 36면.

13)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국가의 교육통제정책과 촌락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3, 70면.

전제하에 부형의 위상, 역할, 책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국대전(經國大典)』[14]과 『경제육전(經濟六典)』[15], 『대명률직해』[16] 등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서 내용을 보충하고자 한다. 조선 전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사의 인용 범위는 태조에서 『경국대전』체제가 성립한 성종 연간으로 제한할 것이다. 한편 조선조 유교적 사회체제의 확립과 소양의 함양은 조선 초 국가 주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16세기 사림들의 자발적인 성리학적 이념의 습득 및 실천이 뒷받침되어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17] 이에 조선 중기 이후의 내용은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비교・검토하여 논할 계획이다.

2. 조선 전기 유교식 '가(家)'의 형성

1397년(태조 6)에 편찬된 『경제육전』의 「예전」의 혼인 조는 유교 사상에 근거하여 혼례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18] 혼례는 '내치를 바로잡아서(正內治)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奉宗廟), 아래로는 후대를 잇기 위한 것(繼後世)'으로 그 기능을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가'는 소속원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분업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한 생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다.[19] 그럼에도 혼례를 통해 인륜의 근본인 부부가 있게 되어 가(家)로 이어지니, 혼례는 개개인의 중대사이면서도 상하존비(上下尊卑)에 근거한 인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적인 의례에 해당했다. 따라서 뒤이을 아들을 세우는 규례, 제사를 행하는 규례 모두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또한 『경국대전』에서는 존비의 차이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규정을 더욱 차별적으로

14) 『경국대전』은 다음의 책을 인용하였다. 윤국일, 『신편 경국대전』, 신서원 편집부, 1998, 신서원.
15) 『경제육전』은 다음의 책을 인용하였다. 윤국일, 『경국대전 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6.
16) 『대명률직해』는 다음의 책을 인용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편, 『대명률직해』, 한국고전번역원, 2018.
17)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2007, 영남대 출판부.
18) 경제육전의 실물이 현존하지 않아 실록에 법전을 인용한 기사를 찾아 이를 통해 조문을 추적, 발췌하고 그 내용을 경국대전 체제에 즉하여 배체하는 방식으로 복원하였다. 양혜원, 「『경제육전』 도승・도첩 규정으로 본 조선초 도승제의 의미」, 『한국사상사학』 57, 한국사상사학회, 2017, 130면.
19) 최봉영, 「성리학적 인간관과 인본주의」, 『사회사상과문화』 2, 동양사회사상학회, 1999, 65-67면.

제시하고 있다. 신분의 고하, 맏아들과 기타 자손 간의 제사 지내는 규정을 다르게 정해놓았다.[20] 조선 왕조는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효 사상 및 유교 경전의 보급, 효행자 장려 등을 통해 풍속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국초 국가 차원에서 민간의 가정이 유교적 질서에 순응하도록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장려하는 동시에 강제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실시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과 갈등을 겪은 것처럼, 민간에서도 순순히 국가 정책에 순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21]

맹자가 "불효 중 가장 큰 것이 후손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것[22]"이라 언술한 이래로, 유교에서 '가'의 핵심적 역할은 후손을 이어 이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 '가'를 연속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여 가문 단위를 이어가기 위한 유교식 대응이다. 이를 반영하여 혼인 조는 '가'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혼인뿐만 아니라 후사, 초상과 장례, 사당 등의 절차와 규범에는 부계 중심의 종법적 가족 질서가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의 구성원들은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유교식 의례를 학습하고 행함으로써 유교 윤리를 내면화해야 했다.

> 사대부의 가묘(家廟)의 제도가 이미 영갑에 나타나 있는데, 오로지 부도(浮屠)를 숭상하고 귀신을 아첨하여 섬겨, 사당을 세워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지 않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날을 정하여 사당을 세우게 하되, 감히 영을 어기고 오히려 예전 폐습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헌사(憲司)로 하여금 살피어 다스리게 하소서.[23]

태조 6년, 간관(諫官)의 건의 내용을 보면 사대부임에도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지 않는 데다가 부도를 설치하는 등, 조선 초 민간의 가정에서는 고려 중세적 의례와 관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경제

---

20) 『경국대전』 권3, 「예전」, 奉祀.
21) 이와 관련하여 이숙인은 조선 전기 사림들의 제사 의식과 설행에 있어 속례의 많은 부분과 갈등을 일으켜 원활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였다. 이숙인, 「조선전기의 제사 담론 : 人情과 交感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189-218면.
22) 『孟子』 권7, 「離婁章句上」, "孟子曰, 不孝有三, 無後爲大."
23) 『태조실록』 권11, 1397년(태조 6) 4월 25일.

육전』에서 "공경 대부(公卿大夫)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가묘(家廟)를 세워 때때로 제사지낸다. 어기는 자는 불효로 논죄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민간에서는 백 명 중 한 두 명만 가묘를 세우고 있는 현실이었다.[24] 이에 사람의 자식된 뜻(人子之意)이 없다는 이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함께 국가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국가가 직접 가묘를 세우는 기한을 설정하여 주고, 독촉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찰사가 불효죄로 벌을 주는 규정을 세워 실시하게 한 것이다.[25] 이어 수도 한양에서는 "석 달 만에 서로 교대하여 관할 안의 불효·부제(不悌), 술을 마시고 서로 싸우는 자,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자를 항상 관찰"하여 고하도록 했다.[26]

불효는 『대명률』에서 십악대죄(十惡大罪)의 하나로 정한 만큼 유교 윤리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강력한 죄에 해당하였다. 『대명률』은 "조부모나 부모를 욕하거나, 처나 첩이 남편의 조부모나 부모를 욕하면 모두 교형"[27],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의 명령을 어기거나 봉양하는 데 모자람이 있으면 장 100"[28]으로 불효에 해당하는 조문을 규정하였다. 조선 왕조의 경우에도 "아들과 손자, 아내와 첩 또는 노비로서 부모나 가장을 고발하는 것은 반역음모와 역적의 경우를 내놓고는 교형에 처한다"[29]라는 조문에서처럼 '가' 구성원 간의 질서를 구분해놓았다. 이와 반대의 규정은 없지만 자손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랫사람과 아랫사람의 위상을 국가가 명확히 규정해준 것이다. 『대명률』의 경우 아들이나 손자가 조부모나 부모를 때리는 경우에는 모두 참형이었다.[30]

또한 『대명률』에서 "아들이나 손자가 조부모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

24) 『태조실록』 권11, 1397년(태조 6) 6월 9일.
25) 『태조실록』 권11, 1397년(태조 6) 6월 9일.
26) 『태종실록』 권13, 1407년(태조 7) 4월 20일.
27) 『대명률직해』 제21권, 「형률」, 매리(罵詈), 352조, "罵祖父母父母 "凡罵祖父母 父母 及妻妾罵夫之祖父母 父母者 竝絞."
28) 『대명률직해』 제21권, 「형률」, 소송(訴訟), 362조, "凡子孫違犯祖父母 父母教令 及奉養有缺者 杖一百."
29) 『경국대전』 권5, 「형전」, 고존장(告尊長).
30) 『대명률직해』 제20권, 「형률」, 투구(鬪毆), 342조, "凡子孫毆祖父母 父母 及妻妾毆夫之祖父母 父母者 皆斬 殺者 皆凌遲處死."

처나 첩이 남편의 조부모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여서 조부모나 부모가 때려 죽이거나, 가르침을 어겨 법도에 맞게 벌을 주다가 뜻하지 않게 죽게 하거나, 과실로 죽게 되면 각각 논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통해 아들이나 손자는 가정에서 부모나 조부모의 가르침과 명령(敎令)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부모나 조부모의 교육적 권한을 인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가'의 구성원을 '법도에 맞게' 벌을 주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만큼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법도에 맞게'라는 규정에서와 같이 인륜에 어긋나지 않아야 했다. 만약 "자식·손자가 가르침과 명령을 어겼기에 조부모나 부모가 이치에 맞지 않게 때려서 상해하여 죽게 하면 장 100, 고의로 죽이면 장 60 도 1년"으로 '이치에 맞지 않은' 훈육은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국가로서는 가정 내 교화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가정의 후사가 끊겨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피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 왕조는 형률의 경우 『대명률』을 적용[31]한다는 규정과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국가는 '가' 구성원의 교육과 교화를 책임지는 자가 부모나 조부모임을 명시하였으며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두었다.

더욱이 유교적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조선은 불효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했다. 국가는 '예악을 정비하고 학교를 일으켜' 강상 간 효제의 유교 윤리를 전파하였지만 국가가 민간까지 일일이 교화를 담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32] 조선은 지방의 군현에 파견된 관찰사로 하여금 각 가정의 불효 사항을 감독시킴으로써 유교식 가정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이는 조선 사회가 가정을 단순히 사적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고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교적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적 영역으로 포섭 및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대명률』에서 다루어진 불효의 범위와 내용은 조선 왕조에서 더 추가되었다. 즉 "조선 왕조는 인류 보편적인 패륜이 아닌 신주 또는 가묘의 미설립 등 유교식 불효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33] 그러나

31) 『경국대전』 권5, 「형전」.
32) 『태종실록』 권26, 1413년(태조 13) 11월 12일.
33) 김가람, 「조선 전기 유교식 불효의 출현: 성종 대 이심원 불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71, 한국사상사학회, 2022, 202면.

성종 조 "사대부 집에서 단지 사당만 세우고 신주는 받들어 모시지 아니한다"[34]는 비난에서 알 수 있듯, 가정이 국가 정책에 처음부터 순조롭게 협력하지는 않았다.[35] 『가례』가 민중의 생활 속으로 침투하게 된 17세기 전까지[36], 가정에서의 유교식 교화는 조선 전기 전 기간에 걸쳐 서서히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3. 조선 전기 '가' 교육의 담당자

그렇다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교화와 교육을 담당했을까? '부형이 자제들을 가르치지 않고 자제들도 학문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으니'[37]라든지, '자제가 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실로 부형의 허물,'[38] '부형이 있어도 (동몽이) 공부하지 않는'[39]등의 실록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조선 사회에서 가정을 대표하여 구성원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자를 특별히 '부형'이라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은 5세에 아버지를 여의어 가정에서 친히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다."[40]나 "태어난 지 9년 만에 선친께서 돌아가셔서 가정의 가르침을 귀로 듣지 못하였다."[41]는 16세기 문집의 기록도 가정 교육에서 부형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유교적 전통에서 가정에서의 교육 책임자로 특별히 부형을 언급하고 강조한 자는 맹자라 할 수 있다.[42] 유교 사회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군주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던 맹자로서는 국가에서 학교를 세워 교육하는 동시에 가정 내 부형의 역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

34) 『성종실록』 권159, 1483년(성종 14) 10월 4일.
35) 정재훈은 이러한 요인으로 기층민 내지 향촌의 여러 계층들이 성리학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분석하였다. 정재훈, 「조선 중기 사족의 위상」,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46면.
36) 이승연, 「'個'와 '家': 『주자가례』의 출현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3, 동양사회사상학회, 2000, 188면.
37) 『성종실록』 권6, 1470년(성종 1) 6월 15일.
38) 『성종실록』 권7, 1470년(성종 1) 8월 10일.
39) 『중종실록』 권1, 1506년(중종 1) 12월 29일.
40) 『대곡집』 권 하, 「希庵墓碣」, "公生五歲 喪其父 未及趨庭承訓."
41) 『대곡집』 권 하, 「朴承旨墓碣」, "生九歲先子見背 趨庭之訓."
42) 이에 비해 공자는 부형이 담당해야 할 교육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았다.

> 맹자가 말하기를 "증자와 자사는 생각하는 방법이 같다. 증자는 사람들의 스승이요, 아버지와 형님의 자리에 있었고, 자사는 신하이고 미천한 신분이었다. 증자와 자사의 입장이 서로 바뀐다면 역시 모두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43]

맹자는 증자와 자사와의 대비를 통해 스승과 부형/신하와 미천한 자의 위상이 같고 다르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맹자에 따르면 군자, 임금, 스승, 부형은 각자의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나머지 구성원을 인륜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 이에 부형은 임금과 스승처럼 가족 구성원들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44] 그런데 왜 부모가 아니라 부형이라고 하였을까? 맹자는 자녀를 가르칠 때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러나 각자가 행하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부간 분별을 하듯, 부모가 가르치는 대상과 내용은 뚜렷하게 구분된다. 맹자는 "남자가 관을 쓰는 예식을 행할 적에는 아버지가 훈계를 해주고, 여자가 시집갈 적에는 어머니가 훈계"하는데 어머니의 훈계 내용은 남편에게 올바르게 순종하는 부녀자의 도리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45] 맹자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유교의 종법 질서를 여아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머니 또한 가정 내 교육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군자의 도가 아닌 남편에 대한 순종을 논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훈계와는 구분되었다. 이러한 부모 교육의 차별적 인식은 자녀 교육의 총체적 책임자이자 '가'를 유지, 계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남자 중심으로 교육이 행해지고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리집안의 가장이나 늙은이, 혹은 교수나 훈도 등을 시켜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한다.[46]

---

43) 『孟子』 권8, 「離婁章句 下」, "孟子曰 曾子子思同道. 曾子, 師也, 父兄也. 子思, 臣也, 微也. 曾子子思易地則皆然."
44) 『孟子』 권8, 「梁惠王章句 上」, "(…) 入以事其父兄 出以事其長上 (…)."
45) 『孟子』 권6, 「藤文公章句 下」, "丈夫之冠也, 父命之. 女子之嫁也, 母命之. 往送之門, 戒之曰, 往之女嫁, 必敬必戒, 無違夫子, 以則爲正者, 妾婦之道也."
46) 『경국대전』 권3, 「예전」, 奬勸.

맹자가 지녔던 부모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유교 사회를 지향한 조선 왕조에서 더욱 공적인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실록이나 개인 문집과 달리 『경국대전』에서 부형이라는 지칭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가장(家長)이라는 지칭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은 법률상 외부에 대해서 집을 대표하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그 밖에는 첩에 대한 부, 노비에 대한 주인, 고공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47]는 이순형의 지적처럼 가장은 일종의 갑과 을의 권력 관계에서 갑에 해당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위의 『경국대전』 조항을 살펴보자면, 교화에 있어서 부녀자와 어린이들은 남성 가장, 연장자와 대비되는 관계이며 객체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가 부녀자와 어린이들의 가정 내 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조선 중기 이후 남성 가장은 조상 숭배, 가족의 부양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48]

그런데 조선 전기는 남자가 여자 쪽으로 장가가는 전통적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아직은 친영제(親迎制)보다 더 민간에서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었다.[49] 이는 현실의 가정에서 구성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외가나 처가와 같은 모계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는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고려 중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윤기엽에 따르면 고려시대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부인의 몫인 경우가 많았다.[50] 새 왕조로 교체되었지만 민간에서의 관습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조선 중기의 신사임당과 율곡의 가계에 관한 연구들은 외할머니, 어머니 등에 의한 지도가 자손들의 교육에서 부형 못지 않은 비중이 있었음을 보여준다.[51] "선생이 맨 처음에는 모부인에게

47) 이순형,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유학적 재해석」, 『한국학보』 19(2), 일지사, 1993, 107-108면.
48) 정영신, 「남성 가장의 역할과 기능: 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8, 온지학회, 2008, 251면.
49) 이숙인, 「조선 전기 가족 담론 : 이념과 현실의 작용과 반작용」, 『국학연구』 47, 한국국학진흥원, 2022, 85면.
50) 윤기엽, 「고려시대 지배층 관료의 가족생활상 연구 : 부부 묘지명을 통한 부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7, 한국국학진흥원, 2022, 28면.
51) 송수진, 「율곡 이이: 결핍과 채움의 인격교육적 삶」, 『인격교육』 9(2), 한국인격교육학회, 2015, 34면.

수학했고 더러는 스승에게 나아가기도 하였으나"[52]라는 율곡의 『연보』라든지, 그가 직접 쓴 모친의 행장[53]을 통해 율곡이 가정에서 부형이 아닌 어머니로부터 수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율곡의 사례는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이뿐 아니라 남녀 거주 공간의 구분이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연구[54]도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그 밖에 조선 전기 어머니 쪽 재산과 경제력,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연구들도 현실의 가정에서는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들의 가정 내 목소리가 낮지 않았음을 보여준다.[55]

이런 현실이었음에도 조선 전기는 국가가 공적인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의 가족 내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켜갔다.[56] 부 중심의 종법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부녀자의 위상을 부형보다 낮춘 것이다.

> 군자(君子)를 가까이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 하는 것은 군주의 지극한 덕입니다. 군자가 측근에 있으면 인의(仁義)의 설과 도덕의 의론을 항상 귀에 접하게 되어 훈도(薰陶)되고 점차 감화되어 날로 고명(高明)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마는, 소인이 측근에 있으면 비루한 말과 달콤한 말의 청탁이 때때로 시행될 수 있고, 아첨하는 간사한 계획이 때때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날로 총명을 가리워 어두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고금의 치란과 흥망의 기틀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여러 현인을 접견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강론하시고, 여러 소인과 부녀자들을 날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57]

---

52) 『栗谷全書』 권33, 「年譜」, 七歲. "先生始受學於母夫人 開就外傳."

53) 『栗谷全書』 권18, 「先妣行狀」.

54) 김종헌·주남철, 「한국 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2), 대한건축학회, 1996, 83면.

55) 박경, 「조선 전기 상속법 논의를 통해 본 부모의 위상」, 『가족과문화』 21(1), 한국가족학회, 63-66면; 박도식, 「강릉과 율곡과의 관계」, 『율곡학연구』 18, 율곡학회, 2009, 162-163면; 이순형, 「경국대전을 통해 본 조선 초기 여성의 지위」, 『가족과문화』 13(2), 한국가족학회, 2001, 159-177면.

56) 이숙인, 「조선 전기 가족 담론: 이념과 현실의 작용과 반작용」, 『국학연구』 47, 한국국학진흥원, 2022, 111면.

57) 『태조실록』 권2, 1392년(태조 1) 9월 21일. " 近君子遠小人, 此人主之至德也. 君子在側, 則仁義之說, 道德之論, 常接乎耳, 薰陶漸染, 日進乎聖明, 小人在側, 則卑辭甘言之請, 有時而得行, 邪媚詭詐之謀, 有時而

위의 실록 기사는 유교적 종법 질서를 추구했던 성리학자들은 부녀자를 소인과 함께 현인(賢人)과 대비되는 자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의 기원은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58]는 공자의 언술에서 기원한다. 공자는 이들을 군자와 대비하여, "가까이 해주면 불손하고 멀리하면 원망하는 자"로 언급하였다. 여러 언술 중 이 한 문구만을 가지고 공자가 여성을 소인과 동일한 위상으로 바라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녀자를 소인이나 어린아이와 같이 교화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의 가정에서는 현모(賢母)의 적극적인 가르침과 교육적 영향 아래 성장한 자녀들이 분명 존재했으나 공적인 담론 속에서 현모는 사라지고 수동적이고 어리석은 부녀자라는 통념이 자리 잡았다. 이처럼 조선 초 성리학자들의 공적인 발언과 법률 규정에서 부녀자는 유교 윤리에 근거하여 소인이나 어린이와 동일한 위상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이는 상하존비에 근거한 엄격한 삼강(三綱)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가 부녀자의 위상을 낮추고, 부형이라는 용어를 통해 가정 교육을 대표하는 자로 남성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4. 부형의 교육적 책무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그 한계

1) 관학 정착 및 장려를 위한 부형 동원

국가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을 사회 전반에 확산 및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정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간 가정의 협조를 최대한 구할 수밖에 없다. 조선 왕조는 유교식 통치 이념을 사회 전반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정 단위에서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교적 이념이 덜 정착했던 고려 왕조와 비교된다. 고려 성종은 불교와 토착신앙이 지배하던 고려 사회에서 유교를 사회통치이념으로 정비했다.[59] 이 과정에서 효자/불효자를 구분하여 차등 대우를 실시함으로써 가정을 통치 이념 구축의 협력자로 포섭했을

得成, 日就乎掩晦. 此古今治亂興亡之機也. 願殿下日接群賢, 講論治道, 無使群小婦女, 得以日近."

58) 『論語』 제17, 「陽貨」, "唯女子与小人为难养也, 近之则不孙, 远之则怨."

59) 최인표, 「고려 성종의 유교정치이념 채택과 역사적 의의」, 『국학연구』 5, 한국국학진흥원, 2004, 174면.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언질을 통해 부모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했다.

> 또 여러 주·군·현의 장관과 백성들에게 가르칠 만한 자제들이 있거든 그들을 알뜰히 훈계해서 선생에게 배우도록 하라. 만일 그 부모가 국가의 방침을 모르고 살림살이를 시키기 위하여 다만 눈앞의 이익만 보고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며 "학습은 해서 무엇하는가?" "글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여 공부는 방해하고 나뭇짐만 지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일생 동안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 부모는 영화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저 영월은 농사를 버리고 존귀하게 되었으며 광형은 벽을 뚫고 공부하여 성공을 하였으며 주옹자는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마장경은 호화스러운 수레를 타고 촉나라로 돌아갔으니 이들은 모두 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겼던 것이다. 이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면 진실로 모범이 될 점이 많다. 아아! 재주를 가지고 임금을 섬기는 것은 충성의 시작이요, 세상에 이름을 날려 부모의 영예를 나타나게 하는 것은 효도의 마지막이다. 충효가 훌륭하면 어찌 벼슬을 아끼겠느냐?60)

987년 성종이 내린 교서는 국가 정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할지를 언급하고 있다. 성종은 부모가 자식의 공부를 방해하고 집안일만 시킨다면 영화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효'가 곧 '충'이며 그 '효'는 곧 부모의 '영예'를 높이는 일, 그 중 급제임을 강조하였다. 성종의 발언은 당시 지방의 자제들을 선발해 서울의 관학에 수학하게 했으나 이들이 고향과 부모를 그리워하느라 수학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잦아진 일과 관련했다.61) 아직 중세적 가치관이 강한 시대에서 지방의 자제들에게까지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설득시키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오히려 가정에서는 불교를 믿고 불공을 드리는 것이 대대로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여겼을 것이다.62) 이러한 상황에서 성종은 유교 지식을 보급 및 장려하고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정적 정책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부모들의 협조가

60) 『고려사』 권3, 987년(정해 6).
61) 『고려사』 권3, 987년(정해 6).
62) 이러한 대중의 믿음은 불교가 삼국에 전래된 이래로 통용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삼국유사』의 염촉 이야기는 누구나 불교를 믿고 가정에서 불공을 드리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대중의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유사』, 권3, 「흥법(興法)」, 원종흥법 염촉멸신(原宗興法 厭髑滅身), "於是家家作禮必獲世榮, 人人行道當曉法利."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과거를 통해 유학적 소양을 지닌 관료를 선발해야 하는데, 가정에서 인재들을 학교에 수학하는데 방해한다면 또는 그 학교에서 수학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교육을 통해 유교적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종은 자식의 입신양명을 위해 부모가 인식을 바꿔 국가 방침에 협조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이와 관련한 물리적 강제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만약 가족과 고향이 그리워 학교를 그만 두려는 자제들을 부모가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지 못한다고 해도, 자제를 비롯해 부모에게 행해지는 제제는 없었다. 다만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부모가 될 것인가, 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금께 충성하는 부모가 될 것인지 부모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이런 식의 화술은 강제성은 없어도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 정책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조선은 건국 초부터 부형이 그 자제들에게 관학 교육 및 과거 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형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실시하였다.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사를 차려 주는 등 이들 가정과 국가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주었다. 『경국대전』에 "아들 다섯이 과거에 오른 부모에게는 임금한테 보고하여 해마다 쌀을 보내주며, 부모가 사망했으면 벼슬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 준다."는 조항이 그 예였다.[63] 오자등과(五子登科)는 부모로서의 최고의 명예가 아들을 낳아 가를 계승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에 봉사하는 관료로 키워 국가 체제의 안정성 및 연속성 유지에 기여하는 것임을 인식시켰다. 더욱이 가정의 중대사이나 사적인 영역에 속했던 '가' 단위의 제사를 국가가 지내줌으로써 그렇지 못한 '가'들과 비교하여 가문의 우월함을 공인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좌승지 박중손과 우승지 노숙동이 경복궁에 예궐하여 생원・진사의 합격자를 방방(放榜)하였는데, 시신(侍臣)과 삼관(三館)의 관원이 모두 시위하였다. 나라의 풍속에, 합격자의 성명을 큰 소리로 불러 합격자가 들어오면, 부형과 족친이 모두 따라 들어와 숙배하게 되어 있었다.[64]

63) 『경국대전』 권3, 「예전」, 奬勸. "五子登科者之親, 啓聞, 歲賜米, 歿則追贈致祭."
64) 『단종실록』 권5, 1453년(태조 1) 2월 12일.

이 외에도 문과나 무과 합격 시 국가가 은영연(恩榮宴)과 영친연(榮親宴)을 베풀었다.[65] 또한 방방(放榜) 의식을 시행하였다. 방방은 고려 진사시(進士試)에서 행해진 것이나 조선은 국초부터 예조에서 방방을 규정하고 실시하였다.[66] 국왕이 직접 의식에 참여하는 방방은 합격자와 가족들이 무한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자제들의 학구열을 고무시키기 위함이었다.[67] 국가는 이러한 국가적 행사에 합격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형도 참석시킴으로써 국가적 행사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했다. 고려조 성종의 경우 부모가 자제들의 관학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환기시켰다면, 조선의 방방 의식은 더욱 극적으로 부모에게 관학 교육을 홍보하고 장려하였다. 이상의 정책들은 가정이 국가 정책에 적극 참여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관직)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상(명예) 등을 홍보 및 체험시킴으로써 부모로 하여금 자제들의 관학 교육 참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유도하였다.

그렇다면 장려책 말고 반대의 경우, 즉 자녀를 교육하지 않아 처벌받는 규정은 없었을까? 조선은 건국 초부터 "첩 소생의 자손에게는 문과 시험과 생원 및 진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불허"[68]하거나 제사 지내는 규정에서도 첩의 아들에게는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여 처첩 간 위계질서를 형성하였다.[69] 그러나 부형이 '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없었다. 게다가 부형이 '자'를 상하존비 규정에 따라 적자(適子)와 서자(庶子) 간 차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전기의 진사 이준(李遵)과 그의 아들 이몽경(李夢慶)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준은 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개인적 감정을 맏아들 이몽경에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에 비해 두 첩과의 사이는 좋았고 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애지중지하였다. 이준은 개인적 친소 감정에 따라 몽경을 그대로

65) 『경국대전』 권3, 「예전」, 奬勸. "凡中文·武科者, 賜恩榮宴于議政府. 榮親宴時, 本曹啓聞, 賜酒樂. 居外者, 守令設宴. 親歿者, 設祭. 中第一名者, 賜米."
66) 『태조실록』 권9, 1396년(태조 5) 5월 6일.
67) 이원재, 「조선전기 방방(放榜)의 교육정책적 의의」, 『한국교육』 40(1), 한국교육개발원, 2013, 13면.
68) 『경국대전』 권3, 「예전」, 諸科, "罪犯永不敍用者·贓吏之子·再嫁失行婦女之子孫及 庶孽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 非居本道者·朝士見在職者, 勿許赴鄕試."
69) 『경국대전』 권3, 「예전」, 奉祀.

방치했다. 이에 몽경은 “어려서 배우지 못해 글을 알지 못하였고, 게다가 부형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그저 논밭을 다니며 하는 일이라고는 농사뿐이었다.”[70] 적자임에도 부형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 심지어 글도 읽지 못했다.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이준을 비난 및 처벌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례를 알린 대곡(大谷) 성운(成運)만이 분개하고 안타까워 글로 남겼을 뿐이다. 이 사례만 보아서는 조선 전기에 부형이 자녀 교육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적 또는 사회적 제제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상의 윤리를 어긋나면서 ‘자’를 지도해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례는 조선 전기의 ‘가’ 단위의 교육이 현실에서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2) 관직 선발에서 부형 실명제

조선은 국초부터 부형을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섭하였다. 이를 위해 일종의 부형 실명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오부 교수관은 경전에 능통하고 순정하고 근면한 선비를 골라 제수해서 기르고, 생도 가운데 효경(孝經)·소학(小學)·사서(四書)·문공가례(文公家禮)에 능통한 자는 소학을 올리고,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로 하여금 힘써 가르침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삼경 이상에 능통하고 효제·근후한 이는 감시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고 성균관에 올릴 것입니다. 오경(五經)과 통감(通鑑)에 능통하고 덕행(德行)이 드러나 알려진 자를 골라 또한 부시를 허락하고, 경박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는 무리는 비록 재주와 학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더라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명을 기록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부형이나 친척이나 친우로 하여금 그 실제 덕행을 기록하여 유사(有司)에 알리게 하고, 유사가 그 시험에 합격한 자의 덕행과 보거인(保擧人)의 직명을 헌사(憲司)에 보내어, 헌사에서 장부에 기록하여 갈무리해 두었다가, 다른날 시험에 합격한 생도 가운데 근신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보거한 사람도 아울러 죄주게 하여, 길이 항식(恒式)을 삼을 것입니다.[71]

---

70) 『대곡집』 권 중, 「代人作」, “夢慶幼年失學 不解文字 又無父兄誨導之力 居田壤間.”
71) 『태종실록』 권8, 1404년(태종 4) 8월 20일.

태종대에 이르면 관학 진학과 과거 응시에 있어서 부형의 책무를 적극 강조하였다. 성균관에 이름을 등록하고 부시(赴試)를 허락할 때는 응시자의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형이나 친척, 친우가 실제로 그 덕행을 기록하게 하여 유사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즉 선악(善惡)부에 스승이나 학우가 아닌, 부형이 직접 자제의 덕행을 기록하고 보고하라는 것이다. 유학은 본래 일용지간에서 실제 덕행에 힘쓰는 공부이기에, 공부의 실제적 공효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의 덕행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일을 부형에게 맡긴 것이다. 만약 부형이 없다면 친척이나 친우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친친(親親)의 원리에서 보자면 가장 가까운 부자의 관계이다보니, 이들이 사사로운 정으로 자식의 부덕함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에 자신의 기록을 책임지는 의무까지 부여했다. 만약 자제가 합격 이후에 죄를 범하면 추천한 이도 함께 죄를 주도록 규정한 것이다. 부자 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할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일종의 실명제에 해당하는 이 정책은 『대명률』이나 『경제육전』에는 보이지 않는 조항이다. 『경제육전』에서는 지방 생도의 경우 관찰사가 생도의 공부를 대장에 기록하고 등록하였을 뿐이다. 태종 조에 부형이 자제의 공부를 기록하고 관찰하며 책임지는 규정을 논하게 된 까닭은 지방관의 흥학 정책이 의도한 만큼 실효성이 적었다거나 과거에 급제한 관료의 유교적 소양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교 윤리의 일상화, 내면화를 지향했던 조선 사회는 관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육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는 중앙집권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의 부형과 협조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부형을 관학 및 과거 제도 시행에 적극 끌어들인 이유는, 부형을 국가 정책 운영을 위한 협조자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부형을 단순히 자제 교육의 감시자가 아니라, 가정 교육의 실질적 책임자로 상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부형은 가정에서 자제가 실제로 덕행을 행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다. 유학 공부의 특성상, 유학은 직접 언어로 가르치기보다 일상에서

어른이 본을 부지불식간에 보임으로써 선(善)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부형이 자제의 덕행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제에게 본보기로서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자제의 덕행은 부형이 몸소 유교적 윤리를 일상에서 내면화하여 자제에게 본이 될 때 진정성 있게 함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아비가 자애로운데 아들이 불효하고, 형이 우애로운데 아우가 불순한 것은 마땅히 불친 불목(不親不睦)의 형을 가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혹은 치우치는 바가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어질고 어리석음이 혹은 아주 다를 바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헐뜯고 칭찬하는 것이 혹은 사리에 부당할 수 있으니, 만약 정유(情由)를 궁구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모두 내쳐 물리친다면, 훌륭한 인재가 버림을 받게 되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실상을 캐물어서 내쳐 물리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72]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 때문이었다. 현실의 가정에서는 훌륭한 부형의 존재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불친·불목을 저지르는 부덕한 자제가 나오는 사례가 있었다. 위의 실록 기사는 가정 교육의 어려움마저 국가가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부형의 의도대로 자제가 지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덕한 자제는 마땅히 형정대로 처벌해야 하지만 자제의 그러한 행동에는 부모와 형제 쪽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억울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국가로서는 이를 감안하여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3) 부형 연좌제

조선은 진학과 과거 응시에 있어서 부형의 책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앞서 단순히 실명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을 함께 엄격하게 묻는 연좌제를 병행하였다. 연좌제 방식은 중앙통치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지방수령관의 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었다. 지방수령관뿐만 아니라 부형에게도 '가'의 통솔과 운영을 위해 적용되었다. 부형에게 교육적 책무를

72) 『태종실록』 권3, 1402년(태종 4) 2월 5일.

엄격하게 묻는 일은 성리학적 이념의 정착과 관련하였다. 먼저 조선 건국 초부터 국가는 민간에서 불교를 금하도록 일종의 부형 연좌제를 시행했다.

> 무뢰한 중들이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여러가지로 속여 넘기어 변을 일으키고 화가 시작되는 데까지 이르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여리(閭里)에서 붙여 먹고 외방에서 놀고 있는 무리를 소재지의 관원에 칙령하여 통렬히 금리(禁理)를 행하여 도첩을 받지 않는 자는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어기는 자는 죄가 부모·사장(師長)에게 미치게 하소서.73)

유교 사회를 천명한 조선은 민간에 남아있는 불교 신앙 및 관습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양민의 부역, 역과 밀접히 관련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민이 국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중이 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부모와 스승이 책임지게끔 함으로써 국가의 관리체계 속에 불교 신앙을 관리하고자 했다. 이는 조선 왕조가 성리학을 사회 개혁 사상으로 수용하여 대대적인 체제 교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당연한 조치였다. 가령 『대명률』의 경우 사사로이 승이나 도사가 되면 장 80의 죄를 물었다.74) 또한 만약 '가장이 이를 지휘했다면' 가장에게 죄를 물었다.75) 조선 왕조도 백성이 멋대로 출가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위의 실록 기사에서와 같이, 가장이 일을 주관하거나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즉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녀가 자발적으로 출가하더라도 예외 없이 부모나 스승에게 이 일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을 더 강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 국가 통제를 벗어나는 행위는 처음부터 엄격히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이외에도 특히 부형의 책임을 묻는 일은 관료 사회의 기강과 관련해 더 빈도가 잦아진다. 태종 2년 사헌부에서 전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정요(鄭曜)를 탄핵한 사건이 생겼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그의 손자 정발(鄭發)이 나이 14세로서 전농시(典農寺) 직장(直長)을 받았기 때문이었다.76) 자제와

73) 『태조실록』 권11, 1937년(태조 6) 4월 25일.
74) 『대명률직해』 제4권, 호율(戶律).
75) 『대명률직해』 제4권, 호율(戶律).
76) 『태종실록』 권8, 1404년(태종 2) 8월 20일.

관련해 부형에게 직접 책임을 물은 대표적 사건이었다. 이는 『경제육전』의 젖비린내 나는 자제로 관직에 임명된 자는 그 부형을 죄주라는 규정이 적용된 사례였다.[77] 국초부터 조선 왕조는 자제의 언행을 부형과 관련지어 죄를 물음으로써, 부형에게 '가'의 구성원을 책임지고 교육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부형연좌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성조 대 김국광(金國光)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당시 사헌부 이육(李陸)은 김국광의 아우와 사위가 장오(贓汚)를 범하자 '자제가 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실로 부형의 허물'이므로 김국광을 정승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다.[78] 그러나 성종은 친자식도 가르치지 못하는데 아우와 사위는 어찌 가르칠 수 있냐며 윤허하지 않았다. 덧붙여 자식과 아우가 하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며 반문하며 다시는 이 일을 꺼내지 말라 한 바 있다. 부형연좌제는 이론적으로 가의 구성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 인식했으나 이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이 외에도 세종 대 재상 황희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진 재상이라는 평판을 가진 황희였지만 아들 황보신이 장물 도용 죄를 저지른 것이다.[79] 황희는 "자식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그 아비의 교양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면서 세종에게 자신의 파면을 요청하였다.[80] 그러나 세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반면 황보신의 경우 『경국대전』 이전(吏典)에서 "탐장죄를 지은 관리의 아들과 손자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개성부,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경연, 세자시강원, 춘추관 지제교, 종부시, 관찰사, 도사, 수령의 관직에 임명하지 못한다."[81]는 규정에 의거하여 2세대에 걸쳐 연좌제가 적용되었다.[82] 『대명률』의

77) 『태종실록』 권8, 1404년(태종 2) 8월 20일.
78) 『성종실록』 권7, 1470년(성종 1) 8월 10일.
79)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을 참고. 임선빈, 「조선전기 황맹헌의 생애와 관직활동」, 『국학연구』 49, 한국국학진흥원, 2022, 47-50면.
80) 『세종실록』 권91, 1440년(세종 22) 12월 21일. "臣重惟子之賢不肖, 顧其父之教養如何耳."
81) 『경국대전』 권1, 「吏典」, "贓吏子及孫, 勿授議政府·六曹·漢城府·司憲府·開城府·承政院·掌隷院·司諫院·經筵·世子侍講院·春秋館知製教·宗簿寺·觀察使·都事·守令職. 失行婦女及再嫁女之所生, 勿敍東西班職, 至曾孫方許以上各司外, 用之."
82) 임선빈, 앞의 글.

경우, "관원이나 이전이 재물을 받으면 관원은 관직과 작위를 빼앗고 관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며 이전은 직역을 파한다"[83]와 같이 관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자신에게만 적용하여 형정을 부여하지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와 비교된다. 이러한 사례만 비교해보아도, 조선 왕조의 경우 '가'를 공적인 영역으로 적극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가'를 대표하는 장(長)인 부형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부형 본인의 부덕함이 아닌, 자녀의 부덕함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황보신의 사례와 같이, 부형의 부덕함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과 '가' 구성원이 함께 졌지만, 자제의 부덕함으로 인한 부형의 책임은 쉽게 묻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는 유교 윤리에 근거한 사회 질서를 지향하기 위해 중앙집권체제에 기반하여 민간에게까지 통제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부형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형이 자녀를 오롯이 통제하기란 쉽지 않았다. 어디까지 자녀의 언행을 책임져야 하는지의 문제도 발생한다. 만약에 자제들의 부덕함을 모두 부형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위의 성종의 발언대로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덕함을 부형에게 묻는 일은 자칫 부형의 권위를 손상시켜 강상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게다가 왕조의 존립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다. 충효의 논리대로라면, 군주연좌제 즉 백성과 관료의 부덕함을 군주가 책임지고 죄를 벌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종과 세종이 부형연좌제를 실시 해야한다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윤허하지 않은 까닭은, 부형연좌제가 그 교육적 효과에 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 아닐까. 부형에게 자녀 교육의 책무를 엄격하게 묻는 일은 일견 유교적 종법 질서를 강화하는 일이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양날의 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형연좌제는 현실에서 쉽게 적용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83) 『대명률직해』 제23권, 수장(受贓).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조선 전기 국가가 유교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협조자로서 부형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교 사회에서 가정은 효·제를 익히고 실천하는 곳으로 관학 교육을 통한 교화와 더불어 대표적인 교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에서 불교를 수용했던 고려에서 조선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상기한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유교식 가정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글은 어떻게 국가가 가정을 국가 정책의 협조자이자 실천자로 이끌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유교적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던 조선 왕조는 지방 단위까지 국가의 통제체제를 확립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성균관의 문묘를 정비하며 군·현 단위까지 향교를 세우며 과거 제도 규정을 손보았다.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들이 국가 정책을 수행하도록 지방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유교적 종법 질서를 반영한 법적 규정이 완비되어가는 동안, 민간에서는 중세식 관습과 사고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효·제의 장려와 형정을 통해 유교식 '가' 만들기를 시행했지만, '가'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 협조 및 순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가'의 교화와 교육을 대표하는 부형을 상정하고 이들의 적극적 협력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고려에서도 일부 시행되었지만, 조선 왕조에 들어서서 확대 및 강화되었다. 먼저 '가'를 대표하는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부형'으로 인식하였다. 조선 전기는 여전히 고려 왕조의 혼인 문화 및 가정 문화가 남아 있어 가정 내 어머니의 위상이 낮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적 담론에서는 '가'를 대표하여 구성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자로 '부형'을 언급하고, 부녀자를 소인이나 어린이처럼 교화의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유교적 종법 질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국가는 관학 및 과거 제도에 자제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형에게 책무를 부여하였다. 방방 등의 의식에 부형을 공식적으로 참여시킨 정책은

부형이 자제들의 과거 공부를 독려하게끔 유도하게 하였다. 또한 자제가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형이 자제들의 덕행을 기록하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부형이 자제들을 단순히 감시하는 자가 아니라, 가정 내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다루었다. 또한 부형과 자제들이 서로 연좌제로 엮임으로써 가문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 부형이 자제들을 통제 및 관리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유교적 종법 질서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자칫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칼 같았기에, 현실적으로 예외 없이 실시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선 중기 이후 부형에게 주어진 교육적 책무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고려사』
『논어』
『대곡집』
『맹자』
『삼국유사』
『율곡전서』
『조선경국전』
『조선왕조실록』(https://db.itkc.or.kr/).

강문식, 「권근 『효행록(孝行錄)』 주해의 경세론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8, 한국사상사학회, 2007, 251-291면.
김가람, 「조선 전기 유교식 불효의 출현: 성종 대 이심원 불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71, 한국사상사학회, 2022, 199-232면.
김도일, 「유교 가족주의의 이중성: 파벌과 권위주의의 유가적 기원」, 『철학』 135, 한국철학회, 2018, 1-22면.
김종헌・주남철, 「한국 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2), 대한건축학회, 1996, 81-88면.
도민재, 「한국의 전통 가정교육과 유교」, 『종교교육학연구』 10,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29-47면.
박 경, 「조선 전기 상속법 논의를 통해 본 부모의 위상」, 『가족과문화』 21(1), 한국가족학회, 63-83면.
박균섭, 「효도와 효행 : 해석사 검토」, 『인문논총』 78(4),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21, 165-207면.
박도식, 「강릉과 율곡과의 관계」, 『율곡학연구』 18, (사)율곡학회, 2009, 153-182면.
송수진, 「율곡 이이: 결핍과 채움의 인격교육적 삶」, 『인격교육』 9(2), 한국인격교육학회, 2015, 31-48면.
양혜원, 「『경제육전』 도승・도첩 규정으로 본 조선초 도승제의 의미」, 『한국사상사학』 57, 한국사상사학회, 2017.125-159면.
윤국일, 『경국대전 연구』,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6.
윤국일, 『신편 경국대전』, 신서원 편집부, 1998, 신서원.
윤기엽, 「고려시대 지배층 관료의 가족생활상 연구 : 부부 묘지명을 통한 부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7, 한국국학진흥원, 2022, 7-43면.
이상호, 「유교의 자녀교육론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79, 동양철학연구회, 2014, 115-145면.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2007, 영남대 출판부.
이숙인, 「조선 전기 가족 담론 : 이념과 현실의 작용과 반작용」, 『국학연구』 47, 한국국학진흥원, 2022, 79-114면.
_____, 「조선전기의 제사 담론 : 人情과 交感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189-218면.
이순형,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유학적 재해석」, 『한국학보』 19(2), 일지사, 1993, 92-119면.

_____, 「경국대전을 통해 본 조선 초기 여성의 지위」, 『가족과문화』 13(2), 한국가족학회, 2001, 159-177면.
이승연, 「'個'와 '家': 『주자가례』의 출현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3, 동양사회사상학회, 2000, 179-209면.
이승환, 「한국 가족주의의 변화과정과 미래방향 : 한국 "가족주의"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가능성」, 『유교사상문화연구』 20, 한국유교학회, 2004, 45-66면.
이원재, 「조선전기 방방(放榜)의 교육정책적 의의」, 『한국교육』 40(1), 한국교육개발원, 2013, 5-23면.
이존희, 『한국사 23 : 조선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임선빈, 「조선전기 황맹헌의 생애와 관직활동」, 『국학연구』 49, 한국국학진흥원, 2022, 43-76면.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2.
정영신, 「남성 가장의 역할과 기능: 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8, 온지학회, 2008, 249-270면.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_____, 「조선 중기 사족의 위상」,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43-70면.
최봉영, 「성리학적 인간관과 인본주의」, 『사회사상과문화』 2, 동양사회사상학회, 1999, 31-77면.
최인표, 「고려 성종의 유교정치이념 채택과 역사적 의의」, 『국학연구』 5, 한국국학진흥원, 2004, 165-196면.
한국고전번역원 편, 『대명률직해』, 한국고전번역원, 2018.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국가의 교육통제정책과 촌락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3.

【Abstract】

The Status and Educational Responsibilities of Bu Hyung (父兄) in the early Joseon Dynasty

Song, Su J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responsibilities given to Bu Hyung (father, uncle, brother), who was responsible for the edification and education of its members on behalf of the family of the Joseon Dynasty. The Joseon dynasty strengthened its centralized system from the early period in order to establish a Confucian-style social order. The Joseon Dynasty dispatched provincial officials, promoted the scholarship development, and controlled the edification and education of the people (民). In the process, this article reviewed how the state used Bu hyung to control private family education.

The Joseon Dynasty controlled private 'Ga (家)' to educate in a private, independent way, but to educate in accordance with state policy. The state excluded the mother as the responsibility of education in order to establish clan rules centered on father. In public discourse, women were treated as objects to be educated, such as the mean man (小人) and children. It also induced Bu Hyung to actively cooperate with national education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Gwanhak (館學) and public examination system. Furthermore, the real name system and the implicative system were introduced so that Bu Hyung himself educated and supervised the cultivation of Confucian literacy of his sons.

This national policy was not implemented smoothly from the beginning. However, it was able to establish the status and role of Buhyung as a collaborator of state policy and as the director of 'Ga' education in Joseon society.

Keywords: Buhyung (父兄), Ga(家) Education, Home,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implicative system, the real name system.

접수일: 2022.12.30.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3.

* Researcher, The Inst. of Humanities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